

지역균형발전 ISSUE & FOCUS

2017. 01~03_ vol. 07

주요 행사 안내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역성장과 자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과 함께 추진과제 모색이 필요함
수도권 규제 정책의 지속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일 시 : 2017. 6. 1(목), 오후 2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 관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전북연구원)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 : 28명(시·도지사, 국회의원)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 회원 : 28명(실·국장, 보좌관)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자문위원 : 12명(시·도 발전연구원)
- 비수도권 14개 시·도 담당 공무원 : 42명(기획관, 사무관, 주무관)
- 초청인사(사회, 발제, 토론 등) : 10명

많은 관심과 참석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ISSUE&FOCUS

C/O/N/T/E/N/T/S

I. 주요이슈

1.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03
2. U턴기업	10
3. 수도권정비계획법	15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4
5.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28
6. 4차 산업혁명	31

II. 발간 간행물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 방안	37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산업 구조전환의 기회로!	39
3. 구조조정기 경남 조선해양산업의 불황기 극복방안	42

III. 참고

1.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칙	47
2.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 현황	50
3.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회칙	52
4.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회원 현황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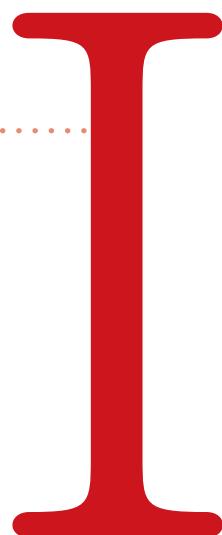
지역균형발전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ISSUE&FOCUS

주요이슈

-
1.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2. U턴기업(국내복귀기업)
 3. 수도권정비계획법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5.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6. 4차 산업혁명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 2016년 3월 24일 발의
-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
 - 규제프리존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
- 6 장 89 개조문으로 구성
 - (1장) 총칙
 - (2장) 규제프리존 지정 및 운영 등
 - (3장) 기업실증 및 신기술 기반사업에 대한 특례 등
 - (4장) 규제프리존에 대한 특례
 - (5장)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등
 - (6장) 벌칙 등
- **개념** : 시 · 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혁신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
- **공간적 범위** : 각 시 · 도의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 규제의 성격 및 구체적인 투자프로젝트 등을 감안하여 시 · 도가 탄력적으로 설정
 - 예시 : 공유민박업은 해당 시 · 도 전체에, 무인기 시범운항은 무인기 전용 공역 내에만 적용
- **규제특례** :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대화
- **맞춤형 정부지원**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 세제 등을 지원

특별법안 발의 및 구성

주요 내용

03

유부총리 “규제프리존 등 경제법안 2월 처리 최선.. 2월 추경은 시기상조”

04

2017.01.06/ 헤럴드경제

- 2017년 1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프리존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
- 여당에서 요구하는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시기상조”라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

與野 “민생국회” 한 목소리…처리법안 놓고 ‘힘겨루기’

2017.01.29/news 1 뉴스

- 여야는 29일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처리 법안을 놓고선 각 당의 입장을 내세우며 힘겨루기
-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이 법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 야당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을 유발하는‘ 노동악법’

dongA.com 뉴스

- 국정공백에 경제법안 처리 뒷전…2월 임시국회도 빈손되나
-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이른바 노동

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

- 전국 14개 시·도별로 규제를 철폐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지난해 5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으나 처리가 무산
- 당초 이 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난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으로 지목되면서 역풍

황 대행

“노동개혁·규제프리존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2017.01.31 / 머니투데이

- 황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각 부처는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
- 노동개혁법안 :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기회와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 등
-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dongA.com

- 黃 대행, “2월 국회 규제프리존法 통과” …당별 고위급 회동 촉구
-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창업촉진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ICT) 활용 등 네 가지 방향에서 활로 모색

05

06

‘인천 빠진’ 규제프리존이 웬말

2017.01.23/ 경인일보

- 정부 · 與 ‘특별법’ 처리 의지 내달 국회통과 여부 큰 관심 市 “인천도 필요” 선제 대응 지역어젠다 채택‘ 묘수찾기’
- 규제프리존 지역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긴장
- 인천시는 국회의 법안처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
 - 인천시 규제프리존 대응 방안 : 4대 분야 13개 프로젝트
 - 낙후지역인 강화도 ·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
 - 공항자유무역지역 · 항만배후단지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기업 신 · 증설을 허용해 줄 것
 -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 등
 - 전문가 토론회, 당정협의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프리존 문제를 지역 어젠다로 채택하고 대응방안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

규제프리존특별법 올해도 둘건너 가나...

2017.02.14/ 시사저널 e

- 한국 규제프리존법안은 2014년부터 제자리걸음, 국내에서는 규제 개혁의 내용과 부작용 해결방식과 관련,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상황이 이렇다보니 규제프리존법안은 지난해 공청회 내용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함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안은 포괄규제완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논란의 중심
- 규제프리존법안에 따르면 특구에서는 지역전략산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
- 이에 따라 규제의 환경, 교육, 개인정보 보호, 건강과 안전 등 개별적인 규제목적의 공익적 가치의 평가가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

**경기동북부 발전 기회 막혔는데도,
‘규제프리존’ 강 건너 불구경**

2017.02.09/ 기호일보

- 낙후지역 기업 투자 여건 등 개선 수도권 제외로 공장신설 등 물거품, 특별법 이달 중 처리 가능성 커져도, 조직 구성해 놓고도 활동 전무
- 규제프리존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협상재개로 이르면 이달 처리가 예상되지만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이 아쉬움
-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적용하는 반대급부로 낙후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안이 검토돼 왔지만 경기도의 노력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경기동북부 발전 기회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 규제프리존법은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개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지만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은 제외
- 반면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시행을 경기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한 기업투자 여건개선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계획
-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 온 경기동북부 지역에 공장신설 등이 가능해지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기대

08

- 하지만 이번 여야간 협상에서는 법안처리에 대한 의견교환만 이뤄졌을 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는 등 법안의 주요 논점에서 '경기동북부의 수도권 제외' 사안이 멀어져 가는 상황
- 특히 규제프리존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 각각 영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동북부의 수도권 제외' 문제가 뒤로 밀릴 가능성 있음

'규제프리존법' 대선 전 3월 국회 통과 사실상 불발

2017.03.23/Chosun Biz

- 국회 기재위 '규제프리존법' 논의 못해, 국유재산법안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 전국 14 개 시 · 도 전략산업의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프리존 (free zone)' 법안의 조기 대통령 선거 전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3일 계류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를 논의했지만, 규제프리존법안은 안건에 올리지 않음. 규제프리존법은 약 1년 동안 국회에 계류된 상태
- 지난해 3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 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다른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처리에 신중한 입장
- 규제프리존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안과 충돌될 경우 상위 법의 위치
- 예를 들어 의료나 관광 관련 분야에 규제가 있어도,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해당 지역의 관련 분야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음

규제프리존法 손 놓고… ‘4차 혁명’ 구호만 요란

2017.03.27/ 영남일보

-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규제 없이民間이 자유롭게 선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익은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장기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자는 취지
- 수도권이 제외됐음에도 당시 새누리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대거 동참한 것은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
- 정부는 전국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이 도입될 경우, 경기 동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제한 완화 등을 검토
- 이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차원에서 규제프리존법안 발의에 함께한 것
- 그러나 특별법안이 수도권을 획일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
-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이 규제프리존이 재벌 특혜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 법안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
- 정부 관계자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현재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손질할 것”이라며 “지역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근본취지를 살려 지역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규제프리존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와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이어질지 주목

09

U턴기업(국내복귀기업)

10

- 해외에서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국내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유지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 2년이상 해외 제조사업장 운영 : 해외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을 2년이상 운영 하였을것
 - 해외 및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을 운영할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최대지분보유자)가 동일할 것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할 것(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도 가능)
 - 국내복귀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설 또는 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세분류상 동일할 것
- 국내사업장¹⁾이 없는 경우
 - <유형1> 청산 또는 양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유형2> 사업장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부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유형3> 청산 또는 양도** :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유형4> 생산량 축소** :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부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하위법령에 규정

국내복귀기업 유형

- 1) 국내사업장 :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새해 지역 죽이려는 정부…

국내 U턴기업 수도권까지 혜택 포함

2017.01.06/ 대전일보

-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
- 정부가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금융 혜택
- 비수도권으로 복귀 때만 주어졌던 지원책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와도 상충된다는 지적
-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힘
- 뒤늦게 일부 정책들의 문제점을 확인한 충남도 등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
-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턴기업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방의 기업유치에 타격이 불가피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턴(U-턴)기업 지원
-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 복귀 기업까지 확대
- 기존에는 비수도권 복귀 기업만 대상
- 지난달 20일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4)이 개정
- ‘수도권은 제외한다’고 돼 있던 것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 한다’로 바뀜
 -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대상에 포함
 - 수도권 내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12

'수도권 유턴기업 특혜법' 재개정 추진된다

2017.01.12/ 경남일보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비수도권 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 비수도권 지역에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지적
- 지난달 20일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4)이 개정
-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의 세제혜택 범위를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 경남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수도권 유턴기업 특혜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지 불과 1주일도 안 돼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조항의 삭제가 가시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오세요

2017.01.12/ 경기일보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신한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 미국, 일본, 독일 등이 보잉사, 도요타, 아디다스 등의 본국 유턴을 지원했던 것처럼, 인천경제청이 한국 해외기업의 본국 귀환을 지원
 - 업무협약은 올해부터 '유턴기업'(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지원 세제가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확대
 - 유턴기업 발굴과 투자자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서비스 지원을 두 기관이 협력 추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 정부가 유턴기업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하면서 비수도권으로 한정
- 지역제한에 따라 관련법상의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유턴기업이 기대 이하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를 완화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
- 유턴기업의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까지 그 범위를 넓혀 규제를 완화

수도권 유턴기업 세제혜택 관련법...신경전 본격화

2017.01.13/ 중보일보

- 정부가 해외에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신경전
- 최근 전국 1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
- 이어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
 - 탄핵 정국을 틈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서울·경기·인천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심의 돼야할 것
- 서울보다 더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인천지역 국회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됨으로서 논란 가열
 - 개정법에 따르면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와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 양평, 이천 등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

2017.01.18/ 충청일보

-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잇따르면서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끈
-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18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
 - 공동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영철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 공동성명서를 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
- 비수도권의 기업유치를 어렵게 하고 지역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재심의·재개정할 것을 요구
- 정부가 비수도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법 개정을 두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나 비수도권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 됐음을 강조
- 비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와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방 거점 육성도 촉구
- 이와 함께 정부는 헌법에서 천명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추진 할 것을 요구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
-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관리
 -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집정유발시설 및 공업지역 지정 등이 제한되며,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받으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인구집중유발시설** :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 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용지와 이에 달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 (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목적

- 189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 · 공포
-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

수십년 된 규제도 수두룩…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나

16

2017.01.10/ 매일경제

-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를 고집하며 불신을 부추기는 형국
- 대표적인 규제 사례가 바로 35년째 바뀌지 않는 '수도권 입지규제'
 - 정보기술(IT) 및 지식집약사업이 주요 도시의 클러스터로 몰리면서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잇달아 철폐
- 반면 한국은 33년 넘게 수도권 규제가 철옹성처럼 버티면서 국가 경쟁력을 잡아먹고 있음
- 이와 함께 원격진료 제한, 은행·산업자본 분리, 경자유전 원칙, 도서정가제 등도 4차 산업혁명을 막는 과잉규제

규제	내용	문제점
수도권 규제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대형건축물 신축 시 과밀부담금 부과	수도권 자체별 11조 5000 억 부가가치, 일자리 16만명 상실
원격진료 제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규제	2020년 43조 세계시장 진입 지연 4만 7000 개 일자리 및 연관산업 발전 기회 상실
경자유전 원칙	농민만이 토지 소유 가능	대기업 농업 진출 등 산업화 기회 상실
단통법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 상한 제한	가격 제한의 인위적 억제에 따른 시장왜곡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
은산분리	비은행자본의 은행 의결권 4%로 제한	IT 기업등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제한
도서정가제	정가의 10%로 할인폭 제한	아동전문 출판사 등 매출 급감 소비자들의 도서 구입 부담 증가

김영우 국방위원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2.03/ 인천일보

- 바른정당의 국방위원장인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한강수계지역 등 낙후지역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골자
- 지난 82년째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
 - 수도권내 과밀지역의 경우, 더욱 과밀화 되었으며, 외곽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등 수도권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어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문제를 유발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
 -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저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적용
 - 공공기관이 이전했던 수도권내 종전 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및 수도권 내 저발전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과 한강수계지역, 접경지역 등의 계획적인 정비

수도권 중복규제 합리적 완화 방안 논의

2017.02.22/ 경기일보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수도권 중복규제, 이렇게 풀어보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 겹겹이 중첩된 규제들로 인해 수도권, 특히 동북부 지역은 국가 사업 추진은 물론 대학신설과 산업단지 등의 입지에 과도한 제한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대상지역의 전면 재검토와 각종 지원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국가의 전략적 자원 마련과 국비 확보 등 대대적인 준비가 필요
- 자연보전권역 환경보전과 산업입지의 Win-Win 방안' 발제
 -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
 - 규제개선을 수도권 개발허용범위(공장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 산업단지공급계획 등)와 환경법제내에서 추진하고,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신설은 억제하고 기존 공장은 집적화를 유도
 -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투자유발효과 2조 6천억 원, 일자리는 4~5천 명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
- 환경민감지역에 산재한 개별입지 및 무허가 업소를 지자체에서는 집단화해 최적의 환경관리를 추진하는 방안
 - 이러한 정책이 작동되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
 - 기존의 자유입지업체를 내버려둔 채, 새로운 업체를 유치하는 경우 환경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
 - 계획입지 조성을 통해 개별입지업체를 100% 이전한 후, 입지의 여유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조사를 거친 후 신규로 업체를 유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조영무 경기연구원 박사
(북부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
(환경공학박사)

전문가

“수도권 규제에 기대는 지방, 이젠 기업유치 경쟁해야”

2017.02.24/ 중보일보

-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완화
- 수도권 역차별 해소는 경기도의 단골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
- 글로벌 국가 경쟁력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역이 낙수효과를 받아 발전할 수 있게 되니 경제문제가 정치문제가 된 상황
 - 수도권 발전을 블랙홀 현상이라는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된 것
 - 지역유치 특파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과시켜 놓고 발전시키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도권도 지역의 하나로 보고 발전 시켜야 함
- 지방도 규제에 기대 낙수효과로 기업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경쟁
- 앞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규제를 이용해 지역적으로 발전시킬 것이 아니고 규제를 풀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
- 대도시권역 발전계획 수립해 발전성 획득
 - 수도정비법이라는 것 자체가 4차 혁명을 앞둔 현재에 와서는 더이상 그 효과가 미미한 법
 - 이미 10년 전부터 여주, 양평, 이천 등 동부권의 도시들이 자연 보전권역에 들어서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인구도 줄어 들고 있다는 기사와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
- 전체 국토의 발전 방향이 대도시권역 발전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 방향
 - 수도권규제는 인구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수도권 인구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사실 동부권 낙후도시의 피해는 일부 지역의 폐허를 주장하는 것이고 지역입장에서는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 권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양금승 산업연구실장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수 교수
단국대 도시계획과

20

이상대 선임연구원
경기연구원

- 시민들의 생활권은 점점 광역화되고 있는데 수도권역에는 발전 계획이 없고 규제만 있다는 것
- 앞으로의 국토발전은 대도시권 권역별로 대도시권 성장관리구역을 선정해 발전해 나가야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을 것
- 수정법 원점에서 검토해 정책 재편 필요
- 사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뛸 것
- 다만 수정법은 수도권의 성장부분과 지역경제성장,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 특히 경계지역의 낙후보다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난개발 유도가 가장 큰 문제로 우선 시급하게 해야할 것은 규제를 완화해 이 난개발을 해결하는 것
 - 계획적 집단화 또는 산업단지를 개발해 수용하고 교통문제를 해결
 - 기업투자 저해와 환경문제 중 한 가지도 버릴 수 없기에 투트랙 발전을 요구
- 당장 비합리적인 규제는 단번에 풀어야 할 것도 있을 것이며, 자연보전 권역의 규제나 난개발 문제의 경우에는 조금씩 단계별로 규제를 완화
- 수정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그 이후 다시한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정책을 다시 재편

“수도권 규제완화, 대선공약 반영하라”
道 ‘19대 전략 과제’ 수립 박차

2017.03.06/ 경기일보

- 경기도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할 19대 전략 과제 마련에 박차
 - 도는 지난주 경기연구원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며 19대 전략의 구체적인 틀을 구상

- 최근 속도를 내기 시작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등 정책의 순조로운 추진
- 각종 난관에 가로막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 ‘수도권 규제 완화’, ‘GTX 조기착공’ 등의 정책이 전략에 포함될 주요 현안으로 거론

경기도 동부 5개 지자체, 99.4%가 개별입지공장 난개발 심화

2017.03.15/ 중보일보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장 규제가 심한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경기 동부 5개 지방정부는 산업단지 입지제한에 따른 개별입지형 공장의 난립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산업단지 조성 시 역차별 유형은 크게 5가지
- **지원단지의 경우**(산업단지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
 - 민영주택 건설공급 시 비수도권은 건설량의 50%를 특별공급 (지역 종사자 · 거주민 우선분양)
 -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은 30%
- **하수도·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도로·용수공급시설의 경우**
 - 비수도권은 100% 지원, 수도권은 접경지역과 평택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50%만 지원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등**
 - 산업단지 조성 시 비수도권은 전액 면제지만, 수도권은 면제 대상이 아님
- 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산업 단지의 용지가격이 개별입지에 비해 매우 높은 점도 난개발의 원인으로 분석

**수정법 궁극적 폐기 필요…
인구 과밀지역만 규제 타겟 삼아야**

2017.03.20/ 중보일보

22

- 수정법 족쇄 35년 - 수도권 비수도권 이분법 탈출
- 국내 경제가 개방형으로 전환되며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의 이익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제로섬이 아닌, 국가 경쟁력을 저하하는 네거
티브섬으로 전락
- 1980년대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제는 낡은 규제라는
학계의 목소리
- 전세계적으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설립을 막는 곳은 한국
- 한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진 1980년대는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이 있었음
- 그러나 지금은 고도가 아닌 만성적인 저성장, 때로는 역성장이 우려
되는 시기라 환경이 달라짐
- 만약 수정법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게 된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
- 비수도권 지역에 인센티브를 준게 결국 균형개발정책에 의한
혁신도시
 -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이 세종시라면, 열개 산하기관이 이전한 혁
신도시가 사실은 인센티브
- 지역간 갈등을 완화할 첫 출발은 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정책용어로
안쓰는 것부터 시작, 지역간 차별성,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소
 - 수도권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수도권지역은 중심이고 핵심
이지만, 그외 나머지 지역은 자연스럽게 변방이고 둘러리로 표현
- 궁극적으로는 폐기해야 하지만 비수도권은 폐기하면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정법의 상징성이 강하여 수정법은
단계별로 완화할 필요

‘경제 빌미’ 노골화된 수도권 정책

2017.03.27/ 영남일보

- 정부, 지방재정 통제는 오히려 강화, 규제개선 명목, 투자 활성화 대책 잇따라 유턴기업 세제 혜택, 비수도권엔 악영향
- 최근 정부는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를 노골화
- 정부는 지난해 말 전격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지역에 수도권이 추가
 - 인력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비(非)수도권의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도 비수도권과의 의견수렴 과정도 생략
- 수도권 핵심지역인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
 - 오히려 정부는 창조경제 성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명분
 -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 정책 자금을 비롯한 80조원을 투자할 예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10.27)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 현행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또는 개발대상도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신설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안 제17조 신설)’
 -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안 제17조의4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조선업 밀집지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거제 · 울산 · 부산 · 목포 · 군산)

2017.01.06/ 내일신문

- 조선업 밀집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전망
 - 경남 거제, 울산 동구, 부산 영도, 전남 목포, 전북 군산 등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2~3년간 금융 · 세제 혜택, 고용지원, 사업재편 등의 지원
 -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 법이 통과되면 즉시 추진
 - 올 2월 임시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음
-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유력한 곳은 5개 권역 10개 시·군·구
 - 경남권(거제 · 통영 · 고성), 울산권(동구 · 울주), 부산권(영도 · 강서), 전남권(목포 · 영암), 전북권(군산) 등이 5개 권역 국내 조선업 종사자는 국내 전체 조선산업 인력의 90%에 육박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 발표

2017.01.18/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5개 지역을 순차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열고 조선 밀집지역에 대한 2017년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
- 2016.10.31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 1.18 군산 · 영암을 시작으로 1.20 까지 거제, 부산, 울산 등
- 조선업관련 중소협력업체 및 퇴직인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 가동, 대규모 민간투자의 유도, 실업 인력 지원 등을 보다 강화

○ 2017년 중점 추진계획

-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017년 2,400억 원 국비 투입

구분	지원 내용
R&D 지원 (50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설비 기자재, 해상풍력 등 조선업과 연관된 유망분야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우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담비율 완화(33% → 20%),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완화(40% → 20%)
사업화 지원 (45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인증, 시제품제작,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사업화 관련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당 5 천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10% 이상→ 5%) 등 우대지원
투자보조금 (1,106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다각화 추진기업에 대한 설비투자금액의 14% 보조 및 지원예산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우 다른 분야로의 업종 전환외에 신규 업종 추가 시에도 보조금 지급 추진
사업전환자금 (1,250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토대로 시설 · 운전자금 융자 및 세제감면(법인세, 소득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금리 최대 3.0%(17.1 사분기 기준), 전환한 분야의 신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 소득세의 50%를 4년간 감면
기활법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금융, 세제, R&D 등 지원패키지 제공, 조선기자재업체 사업재편 Help Desk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환자금 및 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패키지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 전문가 1:1 컨설팅 실시

**위기업종 밀집지역,
올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

2017.03.05/ 부산일보

- 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루어짐
 - 당장 위기에 부닥친 조선밀집지역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각 지원 방안을 적용
 - 앞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으로 인한 위기지역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
- 경제·산업 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을 지정
-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특정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이나 실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부처간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
 - 특별지역이 되면 위기 상황에 제때 대응할 수 있게 기업경영 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등 단기적 지원이 제공
-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와 체질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게 지원
-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서,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시장이나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28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2)

-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2조)

-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3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 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자리 부족’에 죽어가는 지방…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40% 이상 채용해야**

2017.02.09/ 한국정책신문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제조·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인재 채용 대상 지역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 현행법상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우선해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이전공공기관의 발전소, LNG생산기지 등 주요 제조·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채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과 합리성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 이에 개정안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 이전공공기관의 제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 지역으로 포함

**‘지역균형’ 헛구호…
공공기관 절반 지역인재 채용 미달**

2017.03.09/ 이데일리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내걸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헛구호
- 공공기관 311곳의 2016년 신규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대학교육연구소는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30

-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한 공공기관은 전체 311곳 중 55%(171곳)
-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위해 2014년 7월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시행
- 이 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 여기서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를 지칭
- 지방대학육성법이 제시한 지역인재 채용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지역 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모르쇠로 일관
- 권고기준을 의무화하는 후속조치가 필요

**혁신도시 관련법 바꾸고,
지역인재 35% 채용법 만들어야**

2017.03.30/ 전북도민일보

- 30일 서울 세브란스 빌딩(서울 중구)에서 열린 ‘혁신도시의 지역 성정거점화 전략’ 토론회
- 혁신도시내 공기업이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이란 두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법체계를 바꾸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기피하는 현실은 기관들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채용은 외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에 할당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을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
- 대선주자들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공기업 신규채용 35% 지역인재 할당’ 법제화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

-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기계의 발명으로 생산의 체제가 공장산업 체제로 변화되고 원활한 이동으로 연결성이 강화된 ‘기계 혁명’의 시기
- 2차 산업혁명은 전기동력의 에너지원 활용으로 대량생산체제가 이루어진 ‘에너지 혁명’ 시기
-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 및 자동화로 인해 사람, 환경, 기계 등의 연결성이 강화된 ‘디지털 혁명’ 또는 ‘지식정보 혁명’의 시기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초연결사회로 대변되는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지능 혁명’의 시대로 (김진한, 2016; 장필성, 2016; 강성현, 강성범, 2016)

등장 배경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처음 등장
- 그 이전인 2010년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2020(High-tech Strategy 2020)>의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는 단계를 의미한 것이 시초
- 그 후, 2014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지멘스의 자동화된 자동차 생산 라인을 인터스트리 4.0으로 명명하며 사회 전반으로 확장 (노동조, 손태익, 2016).
- 2016년 1월 21일~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EF 의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2016년 WEF에서는 140여 개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논의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하위법령에 규정

국내복귀기업 유형

- 1) 국내사업장 :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내용 및 분야

- 간단하게 정의하면 4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로 인해 자동화와 연결이 극대화된 ‘초연결, 초지능’이 가능한 사회
 - 즉, 컴퓨터, 사람, 기계 등의 사물(구성체들)이 서로 연결된 자원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능을 갖게 되어 인간의 제어가 아닌 사물간의 제어가 가능해지는 것(강성현, 강성범, 2016)
 - 이제는 거리(distance) 및 자산이나 지식의 소유(ownership), 노하우(know-how)가 파괴되어 사회,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김우주, 2017).
-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이 되는 핵심 기술 및 분야
 -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바이오 및 나노 테크놀로지, 로봇, 3D 프린팅, 클라우드, 사이버 물리 시스템, 스마트객체, 온라인 및 블렌딩 학습, 공유경제 및 성과기반 경제(outcome basis), 온디맨드 경제, 증강현실, 자동진단 및 의료 디바이스 변화 등
- 4차 산업혁명은 금융, 유통, 건설,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고 있지만 현재 스마트 공장, ‘브릴리언트 팩토리(Brilliant Factory)’ 등 제조업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구체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

독일의 사례

〈제4차 산업혁명의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민화, 2016)

- 독일 정부는 고령화와 자원 부족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자 인공지능 중심의 생산 자동화 즉, 스마트공장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끌고 있다.
 - 대표적인 기업인 지멘스(SIEMENS)는 매일 5,000만 건의 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으로 작업지시를 내리는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
 - 제조 제품의 불량률을 0.001%까지 줄여 인더스트리 4.0의 표준 모델로 평가

**'4차 산업혁명' 도 수도권 집중 ...
비수도권 첨단산업 빙慨데기 될 판**

2017.01.06/ 광주일보

- 지방 죽이는 역주행 국가균형발전 정책
- 경기도 성남의 판교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의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육성하는 방안
-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처리 지연과 함께 지방의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엿는 일
- 지난해 정부와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혁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탄핵정국의 여파로 사실상 처리가 장기 지연
-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지연으로 어려움에 처한 각 지역의 혁신산업이 수도권 중심의 4차 산업육성책으로 또다시 좌절할 수 있는 상황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련내용 p33

- 판교 창조경제밸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의 성과를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
-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
- 창업보육센터, ICT-문화융합센터, 정보보호·드론센터 등 지원기관 집적, 저렴한 임대료로 유망 벤처·창업기업 집중 유치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정보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별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전담기관 추가·보완

지역균형발전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ISSUE&FOCUS

발간 간행물

-
-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 방안
 -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산업 구조전환의 기회로!
 - 3. 구조조정기 경남 조선해양산업의 불황기 극복방안

II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 방안

국토 2017년 2월 / 국토연구원

안홍기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
조은주 국토연구원 연구원

| 제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려 사항

비용의 문제

- 혁신기술이 생산방식과 생산성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반 기술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
- 혁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는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순위에 의해 실시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수용하는 전체 계획과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
- 즉,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지역차원의 중장기 실천계획이 시행되어야 함
- 단순히 특정 혁신기술을 이용한 아이템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차원의 장기적 지역 스마트화 정책하에 계획적·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비용대비 수요의 문제

-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는

- 분명히 비용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비용대비 수요가 충분 해야하고 일정부문 규모의 경제가 적용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소지역의 경우 지역거점화가 되지 않으면 산재해 있는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요를 넘어서는 비용이 필요한 것이 자명한 사실
 -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지역과 같은 인구가 적으나 필요한 공공서비스 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지역 내 거점화를 통하여 콤팩트시티와 같은 지역발전전략이 필요
 -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업무가 혁신기술에 의해 대체 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
 -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혁신적인 생산방식을 통하여 기존의 생산방식에 의한 일자리는 분명 위협을 받게 될 것임
 - 저성장기 지역발전에 있어 성장보다는 일자리가 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임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의 수용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결론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은

- 국가적 성장동력일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회
-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의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산업 구조전환의 기회로!

대경 CEO BRIEFING, 제500호, 2017.1.17/ 대구경북연구원

윤상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융합(Convergence)과 속도(Velocity)는 기존 세계 질서뿐만 아니라, 국가간, 기업간, 산업간,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초자동화, 초연결성, 스마트 전문화 등을 매개로 하여 모든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 또한 경제·산업, 사회·문화, 고용·일자리 분야의 획기적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 공간,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
 - 미국 남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그린빌(Greenville)의 사례는 현대적 생산방식 도입, 근로자들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창의적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충출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에 대한 좋은 예시
-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목표로 입체적인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
 - 미국과 독일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 일본과 중국은 정부 차원의 정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
- 우리나라는 제조업 혁신 3.0을 통한 스마트 공장 확산, 국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9대 국가 전략프로젝트, 미래 대한민국 12대 신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주요 부문부터 대책을 마련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각국의 대응

40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구경북의 혁신역량

- 대구경북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2030 미래성장 엔진과 7대 스마트 융복합 산업 등 지역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대구, 구미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ICT인프라와 포항, 경주의 첨단 가속기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다양한 신산업을 육성
- 4차 산업혁명 관련 R&D투자역량을 보면, 사물인터넷, 로봇,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국책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 대구는 첨단의료 및 뇌과학, 로봇, 3D프린팅 분야를 중심으로 1,123억원 투자
 - 경북은 스마트디바이스, 원자력, 바이오신약 관련 R&D사업에 770억 원 투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산업의 구조전환 준비

- 대구경북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역산업을 기술(Technology), 산업(Industry), 인재(Person), 공간(Space) 등으로 구성된 지역 산업 전환 모형(T.I.P.S)을 구축
- 이를 토대로 지역산업 구조전환 방향은 패러다임 변화와 핵심기술 고려하여 산업간 경계파괴, 연구 개발 전환, 창의적 인재양성,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안

● 기술(Technology)

- 개방형, 융합형, 축적지향형 R&D 등을 고려하여 메타기술(기술을 만드는 기술) 관점의 기술개발, 지역내 산·학·연·민 중심의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
- 개방형 혁신기반 기술의 아웃소싱을 통해 외주 지향적 기술융합화 선도, 시행착오의 축적으로 혁신 공유자원 확보 등의 필요

● 산업(Industry)

- 융합화, 시스템화, 특성화 전략 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부품, 기계 금속 등 기존 산업적 관점에서 전후방 연관분야와 특정고객 연결 등을 통한 통합적 비즈니스 관점으로 전환
- 또한 제조업 스마트 전문화에 기반을 둔 기업 중심의 대구경북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진원
- 특히 섬유, 자동차부품, 기계 등 기존 제조업은 연결성을 중심 제품화 지원 · 전환

● 인재(Person)

- 기존에 없는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의적 인재교육 시스템 구축, 창의 학습법 도입을 통한 Home—Questioner(질문하는 인간) 양성, 4차산업 혁명 대비 맞춤형 기술 및 일자리 적용 교육 등으로 소프트파워형 창의적 인재를 양성

● 공간(Space)

- 콘텐츠 중심, 기능과 시설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테마 중심의 특화 단지, 메이커스(Makers)운동에 기반을 둔 컴팩트한 창업공간, 해외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리쇼어링 산업단지 등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

구조조정기 경남 조선해양산업의 불황기 극복방안

42

경남발전지, 제136호, 2017.1.31 / 경남발전연구원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동향

- 2009년~2015년 기간 중 국내시장은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의 모든 지표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불황국면을 반영
- 특히,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수주량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2~3년 뒤의 수주잔량 감소가 예견되는 등 일감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수주량	3,443	11,172	13,550	6,823	15,553	12,076	10,087	-7.1
건조량	14,466	14,906	15,797	13,391	11,395	10,120	11,033	-8.6
수주잔량	47,576	39,145	33,066	24,164	27,883	29,081	29,636	-2.7

주) 수주잔량은 연말기준, 연평균 증가율은 2011~2015년(5개연도)기준.

자료) IHS Fairplay.

출처) 조선해양플랜트 협회, 조선자료집, 2016

- 구조조정기 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을 분석

– 2013년~2015년 동안 종업원 기준 규모가 영세할수록 평균 매출액, 평균부가가치액, 평균종업원 수가 하락한데 비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평균 매출액, 평균 부가가치액 증가

- 이 기간 중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서 평균 종업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 조선사의 인력구조조정이 있었음을 시사

경남지역 산업분석

〈표〉 전국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단위 : CGT)

- 조선해양산업분야 한계기업과 좀비기업 분석
 - 전국의 전산업 분야 외감기업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41.0%인데 비해 경남의 경우 전산업 분야 외감기업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70.6%로 외감기업 중 제조업 비중이 전북보다 높음
 - 경남의 한계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로 전국의 30.3%를 상회하고, 경남의 좀비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2.6%로 전국의 28.9% 상회
 - 2015년 전국의 외부감사기업수는 2014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은 증가
 - 경남의 외부감사기업은 전년도에 비해 6개 감소하였으나,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은 각각 13개, 10개 증가
- 경남지역 내 시·군별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의 현황
 - 2014년~2015년 기간 중 대부분 한계·좀비기업이 증가하였는데 지역별로 김해(9개), 거제(7개), 고성(6개) 지역에 높은 비중으로 소재

시 사 점

- 대형조선사의 경쟁력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계속되어야 함
- 중요기술 개발 및 핵심인력 유지·양성에 힘써야 할 것
- 시장개척, 국산화 개발, 제품다각화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

정 책 방향

- 운영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함
 - 운영자금 저리융자(이차보전) 및 보증확대가 핵심정책
- 중요기술인력 고용유지·보조금을 지원
 - 중요기술인력의 국외 유출 및 기술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출신 고급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및 대학, 유관 연구소 흡수를 적극 알선하고 고용연계 보조금 지급
- 국산화 기술개발, 경영 및 제품다각화 과정을 맞춤형으로 중점 지원
- 고급인력 양성(에버딘 대학 한국캠퍼스)지원을 확대
-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체산업을 발굴·육성
 - 단기적으로 퇴직자 재취업, 창업지원 등의 정책지원을 지속하되, 중장기적으로 조선해양산업 연관산업(제품)에서의 연계 및 산업발전 가능성을 모색, 별도 산업분야에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을 모색하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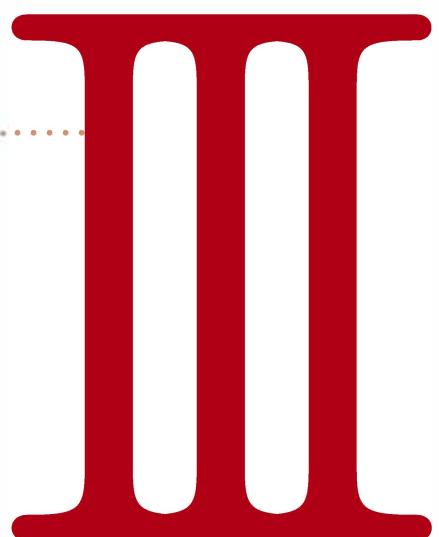
지역균형발전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ISSUE & FOCUS

참고

-
- 1.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칙
 - 2.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 현황
 - 3.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회칙
 - 4.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회원 현황



1.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칙

제1조(목적)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이하 “협의체” 라 한다) 를 구성·운영 한다.

제2조(사업)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시행한다.

1.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 제 · 개정에 대한 공동대응
2.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건의 공조
3. 각 지역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활동 지원
4.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체제 구축
5. 기타 지역 경쟁력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활동
6.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각종규제완화 및 철폐

제3조(구성) 협의체는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별
국회의원 13 명으로 구성한다 .

제4조(운영) ① 협의체의 회장은 호선하되 광역자치단체장 1명, 국회의원 1 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

- ② 회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 ③ 회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④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 간사는 협의체회장을 맡은 시·도(국회의원)의 실무협의회 위원이 된다.

제5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년 6 회로 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하되,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정 2006. 09. 20]

[개정 2006. 12. 11]

[개정 2014. 02. 10]

③ 회의는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결) ① 협의체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는 회원자격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합의결정사항의 효력)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은 협의체의 공동회장을 맡은 기관에서 협의하여 운영하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체 회장을 맡는 시·도의 기획관(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2.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를 위한 기반 조성
3.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완화 및 철폐를 위한 자료 조사·분석
4. 협의체에 상정할 주요 안건의 사전 조율 등

제10조(자문) ① 협의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에는 시·도 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되, 협의체 회장을 맡은 시·도의 연구기관의 주도하에 운영한다.

③ 협의체에서는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기관의(실무협의회 참여 기초자치단체 포함) 분담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회계) ① 협의체의 재정은 회장기관에서 총괄 관리한다.

② 예산 및 결산은 매년 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칙의 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보칙) 본 회칙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합의에 의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1)

이 회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 현황

50

■ 시·도지사 14명, 국회의원 14명

[2017.3.30 현재]

단체장		국회의원		비고
시 · 도	성 명	출신지역	성 명	
부산광역시	서병수	북 · 강서을	김도읍	
대구광역시	권영진	수성을	주호영	
광주광역시	윤장현	남구	장병완	
대전광역시	권선택	유성	이상민	
울산광역시	김기현	중구	정갑윤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세종	이해찬	
강원도	최문순	홍천철원 화천양구인제	황영철	공동회장
충청북도	이시종	청주청원	변재일	
충청남도	안희정	천안갑	박찬우	
전라북도	송하진	익산갑	이춘석	공동회장
전라남도	이낙연	나주.화순	손금주	
경상북도	김관용	포항남구	박명재	
경상남도		양산	윤영석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갑	강창일	

■ 실무협의회 (기획관리실장 14명, 국회의원 보좌관14명)

[2017.3.30 현재]

자치단체	실 · 국장			국회의원보좌관	
	지역번호	실국장	연락처	성명	연락처
전라북도 공동회장	063	기획관리실장		이춘석/익산갑	
	-280	최병관	2100	이창필	02-784-3286
부산광역시	051	기획관리실장		김도읍/북 · 강서을	
	-888	변성완	1800	기남형	02-784-1740
대구광역시	053	기획조정실장		주호영/수성을	
	-803	구본근	2070	김태훈	02-784-2055
광주광역시	062	기획조정실장		장병완/남구	
	-613	김종효	2100	윤재관	02-784-5270
대전광역시	042	기획관리실장		이상민/유성	
	-270	이택구	2100	박창수	02-784-0924
울산광역시	052	기획조정실장		정갑윤/중구	
	-229	김선조	2100	김건태	02-784-5275
세종	044	기획조정실장		이해찬/세종	
특별자치시	-300	이동혁	2100	김필중	02-784-7901
강원도	033	기획조정실장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249	김명선	2100	이재용 공동회장	02-784-5704
충청북도	043	기획관리실장		변재일/청주.청원	
	-220	서승우	2100	신동주	02-784-1626
충청남도	041	기획조정실장		박찬우/천안갑	
	-635	김용찬	2100	신진영	02-784-8540
전라남도	061	기획조정실장		손금주/나주 · 화순	
	-286	문금주	2100	이종우	02-784-9401
경상북도	055	기획조정실장		박명재/포항남구, 울릉군	
	-950	안병윤	2100	황석곽	02-788-2174
경상남도	055	기획조정실장		윤영석/양산	
	-211	최만림	2300	김홍광	02-784-4861
제주	064	특별자치행정국장		강창일/제주시, 갑	
특별자치도	-710	고창덕	6400	이경언	02-784-6084

- 실무협의회 공동회장 :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강원도 이재용 보좌관 (황영철 의원)

- 실무협의회 간사 : 전라북도 기획관(협의체 회장을 맡은 시 · 도의 기획관)

3.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회칙

52

제1조(명칭) 본 회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자문단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자문에 응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협의·시행한다.

제4조(구성) 자문단은 비수도권 13개 시도연구원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회장) ① 자문단의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호선하되, 업무의 편의를 위해 광역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 소속 연구원의 연구원이 담당한다.

② 회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간사는 회장이 회장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지명하여 선출한다.

②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 업무와 연락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로 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하되,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 ① 자문단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는 회원자격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합의결정사항의 효력) 자문단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경비 및 회원기관의 분담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회계) 자문단 재정은 회장기관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12조(회칙의 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보칙) 본 회칙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합의와 일반적 관행에 의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회원 현황

54

■ 11 개 시·도 연구원

[2017.3.30 현재]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비고
전북연구원 새만금물환경 · 정책센터	김재구	연구위원	ppikoo@jthink.kr 063-280-7135	
부산발전연구원 경영사회연구실	이정석	연구위원	jslee@bdi.re.kr 051-860-8802	
대구경북연구원 사회문화실	홍근석	부연구위원	hong0582@dgi.re.kr 053-770-5143	
광주전남연구원지역 행복연구실	조상필	선임연구위원	spcho@gjeri.kr 061-931-9334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문경원	선임연구위원	moonkw@dsi.re.kr 042-530-3510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김성표	연구위원	spkim@dsi.re.kr 042-530-3572	세종
울산발전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이경우	부연구위원	klee@udi.re.kr 052-283-7728	
강원연구원지역 사회연구실	권오영	부연구위원	bayside5050@rig.re.kr 033-250-1336	
충북연구원지역 발전연구부	원광희	수석연구위원	khweon@cri.re.kr 043-220-1122	
충남연구원지역 도시연구부	임준홍	연구위원	jhim@cdi.re.kr 041-840-1121	
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마상열	연구위원	srma@gndi.re.kr 055-239-0109	
제주발전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history@jdi.re.kr 064-726-6141	

● 자문단 간사 전북연구원 박서린 연구원(lin220@jthink.kr/063-280-7238)